산업통상자원부	**보 도 참 고 자 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6. 25 (월)	담당부서	신재생에너지정책과
담당과장	이경호 과장 (044-203-5360)	담 당 자	장민재 사무관 (044-203-5363)

지속가능한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(RPS) 고시 일부 개정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『**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 관리·운영지침**(RPS* 고시)』을 **일부 개정**하고 **6월 26일 (화)부터 시행**한다.

* RPS(Renewable Portfolio Standard) : 일정규모 이상(50만kW)의 발전사업자(공급의무자)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 ('12년 부터 시행)

○ 지난 **5월 18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*** 이후 **행정예고**(5.24~6.12), **관계부처 회람**(5.25~6.5) 등을 통해 **의견을 수렴**하고 **최종 고시안을 확정**했다.

* 발전사, 시공사, 공공기관, 언론, 법조계, 금융계 등 1,000여명 참석(더케이호텔 서울)

□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**(REC : Renewable Energy Certificate) **가중치**는 지난 5월 18일 **공청회 당시 발표(안)에서 변동 없이 최종 확정**했다.

* 공급인증서(REC) = 신재생에너지 발전량(MWh) × 해당 발전원의 REC 가중치

○ **신규 가중치**는 **고시개정일 이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설비 확인을 신청한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**되며, 고시 개정일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설비 확인을 신청하고 가중치를 부여받은 **기존 사업자들은 현재 적용받는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**받는다.

○ 다만, 현재 인허가 등 투자가 진행 중인 **예비사업자**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**기존 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기존 가중치(개정전 가중치)를 적용**받을 수 있도록 **유예기간을 설정**했다.

- 특히, 공청회 이후 유예기간에 대해 **다양한 의견이 접수**되었으며, 인허가 현황 및 소요기간 등을 종합 검토해 **공청회 발표(안) 보다 일부 완화한 최종 유예기간이 확정**했다.

< 유예기간 최종 확정(안) >

① **(임야 태양광)** 고시개정일 **3개월** 이내에 **"발전사업허가"**를 취득

② **(바이오·폐기물 전소)** 고시개정일 **6개월** 이내에 **"공사계획인가"**를 취득

□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의 주요 개정 내용**은 다음과 같다.

1 **(태양광) "임야" 지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하향** (0.7~1.2 → 0.7)

* (유예기간) "발전사업허가"를 고시개정일 3개월 이내에 받는 경우

2 **(풍력) "해상풍력"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상향** (1.5~2.0 → 2.0~3.5)

3 **(바이오) "연소형태별(혼·전소)"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차등 하향**(1.0~1.5 → 0~0.5), **"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"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신설**(혼소 1.5, 전소 2.0)

○ **(우드펠릿) "전소" 단계별 하향**(1.5→1.0→0.5, 유예기간*), **"전소전환" 가중치 하향**(1.5→0.5*), **"혼소" 가중치 제외**(1.0→0*)

* "공사계획인가"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.5, '19년 상반기 이내 1.0, '19년 하반기 부터 0.5 부여

○ **(폐기물 고형연료(Bio-SRF)) "전소" 단계별 하향**(1.5→0.5→0.25, 유예기간*), **"전소전환" 가중치 하향**(1.5→ 0.25), **"혼소" 가중치 제외**(1.0→0)

* "공사계획인가"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 1.5, '19년 상반기 이내 0.5, '19년 하반기 부터 0.25 부여

○ **(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) 전소 2.0, 혼소 1.5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신규 부여**

* 수입산 우드펠릿 대체를 위해 기존 석탄혼소에 미이용 연소 시에도 1.5 부여

4 **(폐기물) "폐기물"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가중치 일괄 0.25로 하향** (0.5~1.0 → 0.25)

* (유예기간) "공사계획인가"를 고시개정일 6개월 이내에 완료한 경우

5 **(에너지저장장치(ESS) 연계) 태양광 연계형**은 '19년까지 현행(5.0) 유지 후 **'20년 4.0, 풍력 연계형**은 '19년까지 현행(4.5) 유지 후 **'20년 4.0으로 하향**

□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** 가중치 개정 외에도 **①한국형 발전차액 지원제도(FIT) 도입, ②주민참여사업 태양광 요건 완화, ③주차장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 우대 가중치 범위 확대** 등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.

① 전년도 2개 반기 장기고정가격입찰 "100kW" 낙찰 평균가 중 높은 값을 매입가격으로 설정
② 현행 1MW 이상 태양광 발전소에서 500kW 이상 태양광 발전소로 요건 완화
③ 주차장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"주차장"에 태양광 설치시 설비용량의 50%만 적용되었던 우대 가중치(1.5)를 설비용량 전부(100%)로 확대

□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**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(RPS)** 고시 개정으로 **"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."**라고 기대하면서,

○ "앞으로도 **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**하고 **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**을 위해 **국민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**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경호 과장(☎ 044-203-5360), 장민재 사무관(☎ 044-203-5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REC 가중치 개정 세부내용

전원	대상에너지 및 기준		공급인증서 가중치		비 고
	구분	세부기준	현행	개정 후	
태양광	일반부지 (임야 제외)	100kw미만	1.2	현행유지	-
		100kW부터	1.0(복합)	현행유지	-
		3,000kW초과부터	0.7(복합)	현행유지	-
	임야		0.7~1.2	**0.7**	유예기간 설정
	건축물 이용	3,000kW이하	1.5	현행유지	-
		3,000kW초과부터	1.0(복합)	현행유지	-
	수상 태양광		1.5	현행유지	-
	자가용 태양광		1.0	현행유지	-
풍력	육상풍력		1.0	현행유지	-
	해상풍력	연계거리 5km 이하	1.5	**2.0**	-
		연계거리 5~10km	2.0	**2.5(복합)**	
		연계거리 10~15km		**3.0(복합)**	
		연계거리 15km 초과		**3.5(복합)**	
연료전지	연료전지		2.0	현행유지	
수력	수력		1.0	현행유지	-
바이오	매립지가스		0.5	현행유지	-
	우드칩, 우드펠릿	석탄혼소	1.0	**가중치제외**	-
		전소 전환설비	1.5	**0.5**	-
		전소	1.5	**1단계 1.0 2단계 0.5**	유예기간 설정
	Bio-SRF (폐목재)	석탄혼소	1.0	**가중치제외**	-
		전소 전환설비	1.5	**0.25**	-
		전소	1.5	**1단계 0.5 2단계 0.25**	유예기간 설정
	미이용 바이오	석탄혼소	-	**1.5**	-
		전소 전환설비	-	**2.0**	
		전소	-	**2.0**	
	기타바이오 (바이오중유, 하수슬러지 등)		1.0	현행유지	
폐기물	부생가스		0.25	현행유지	-
	일반 폐기물		0.5	**0.25**	유예기간 설정
	RDF 전소발전		1.0		
	폐기물가스화발전				
ESS	풍력설비 연계		4.5('18.6월)	**4.0 ('20년)**	-
	태양광설비 연계		5.0('18.6월)	**4.0 ('20년)**	-
기타	IGCC, 수열, 지열, 조류, 조력		0.25~2.5	현행유지	-